

## 2023년 국공립루원앨리스린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

2023년 9월 1일 개원 예정인 국공립루원앨리스린어린이집의 신입원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입소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,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7월 11일  
국공립루원앨리스린어린이집



### 1.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재지	정원	개원(예정)일
국공립 루원앨리스린 어린이집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5 (가정동,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관리동)	72명	2023. 9. 1.(금)

### 2. 반구성 및 모집인원

연번	반구분	보육대상 아동	반수(개)	모집인원(명)
	계		11	72
1	만0세반	2022.1.1. ~ 이 후 출 생	2	6
2	만0·1세반	이 전 출 생 ~ 2021.12.31.	2	6
3	만1세반	2021.1.1. ~ 2021.12.31.	2	10
4	만2세반	2020.1.1. ~ 2020.12.31.	2	12
5	만3세반	2019.1.1. ~ 2019.12.31.	1	15
6	만4.5세반	2017.1.1. ~ 2018.12.31.	1	20
7	장애통합	2017.1.1. ~ 2019.12.31.	1	3

- \*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**정원의 70%까지는 해당 공동주택(루원 린스트라우스아파트만 해당) 단지 내 거주자 자녀를 우선 선발하며, 나머지 30%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**
- \* **영유아의 입소대기 상황에 따라 반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 되어 운영할 수 있음**
- \* 단, “거주자 자녀” 입소대기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일반배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\* **입소우선권을 가진 “거주자 자녀” 중 입소 가확정자는 해당 공동주택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자료(주민등록등본)를 개원 전 최종 증빙서류 제출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**

### 3. 어린이집별 입소대기 신청 및 확정절차

#### 3-1. 입소대기 신청 및 확정절차

구분	· 국공립루원엘리스린어린이집
입소 대기 신청	○ 신청기간 : 2023. 7. 17.(월) 10:00 ~ ○ 신청방법 :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( <a href="http://www.childcare.go.kr">www.childcare.go.kr</a> )에서 영유아 부모가 직접 입소대기 신청(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) * 입소우선권 : “무상임대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중인 영유아”에 체크 필수
입소 확정 (가확정)	○ 입소 가확정일 : 2023. 8. 3.(목) 10:00 ~ ○ 입소대기 신청자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(가확정) : 개별안내 1. 우선순위 및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 2. 동일점수에서는 입소 대기신청 순서에 따름 3. 2순위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이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음 4.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,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○ 입소확정 이후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확정 원아보다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대기자로 관리
입소 확정 이후  증빙 서류 제출 (1차)	○ 증빙서류 제출(1차) : 어린이집에서 해당하는 가정으로 개별연락 - 제출서류 : ①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, 공동주택 우선입소 확인용) ② 입소순위 증빙서류 ③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· 공동주택 우선입소 신청자로서 1차 서류 제출일 기준 해당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세대의 경우 전·월세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제출(2차 최종서류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) * 제출서류의 발급기준일은 23년 8월 발급일자에 한함 ○ 서류제출 및 문의처 : 뒷면(6. 관련문의 및 증빙서류 제출) 참조
증빙 서류 제출 (2차 최종)	○ 어린이집 별도 안내 ○ 입소 우선순위 증빙서류 제출(최종) 및 입소완료(최종확정) - 자격확인을 위하여 입소일 3일내 23년 9월 발급일자 증빙서류제출 (제출 서류의 발급일은 입소일 1주일 이내가 유효함)
입소	○ 2023. 9. 1.(금)

## 3-2. 입소신청자 유의사항

---

### ● 입소대기 신청 유의사항

-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([www.childcare.go.kr](http://www.childcare.go.kr))에서 입소대기 신청
  - \* 입소대기 신청 전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([www.childcare.go.kr](http://www.childcare.go.kr))에 사전 방문 입소대기 시스템 사용절차 확인
  - \* 입소대기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준비(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등)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

※ 입소대기 시스템 입력 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의 경우 “입소 대기 아동 선택”에서 “무상임대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중인 영유아”에 **체크 필수**(거주자 70% 입소우선권 부여와 관련된 사항임)

※ **입소일은 개원일 이후로 체크 -> ‘2023년 9월 1일’로 체크 (‘7월’, ‘8월’은 아님)**

- 입소대기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2곳,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3곳까지 신청 가능하며, 어린이집 입소처리 후 타 대기신청 건은 7일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됨에 유의

- **입소자 확정은 입소대기 신청아동을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, 입소 확정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우선순위 및 입소점수에 따라 순위변동이 가능함.**

-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(입소우선 순위 점수)에 따라 입소확정이 진행되니 착오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신청
  - \*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임의로 보류 조치하고 그 다음 차 순위자 입소 확정 가능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전화, 문자, SNS, 우편, 직접 방문 등(총3회 이상)을 통해 확인
-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,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.

\*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이루는 경우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

- **입소확정 후에 관련 증빙서류 확인 결과 당초 신청사항과 상이할 경우 입소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**

- \* 우선순위는 증빙서류 확인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\* **입소우선순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는 “입소일”을 기준으로 판단**
- \*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,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됨

- 시스템 개방 시간은 전산사정에 의해 지연되거나, 입소대기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음

- 그 밖에 입소대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([www.childcare.go.kr](http://www.childcare.go.kr))에서 확인

---

#### 4. 모집원아 입소 순위

- 영유아보육법 제28조, 시행령 제21조의4,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적용

순위	점수	구 분
1순위	200점 (항목당)	○ <b>맞벌이 가구</b> (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) - 취업의 정의 : 월 60시간 이상 근로 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포함 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되지 않음
		○ <b>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</b>
	100점 (항목당)	○ 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
		○ ♣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		○ 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
		○ ♣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자(장애부모)의 자녀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1]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		○ ♣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
		○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* [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]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[국적법]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* [국적법]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		○ ♣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(제3호), 순직자(제5호·제14호·제16호), 상이자(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·제17호)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* 자동연계 불가시 직접증빙서류 제출[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,가족관계증명서]
		○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* 2자녀 가구의 경우, 3월 입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*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.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(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)
		○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
		○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
		○ 법 제28조, 시행령 제21조의4, 시행규칙 제29조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
2순위	50점 (항목당)	○ 기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족 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*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
		○ <b>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(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)인 아동의 형제·자매</b> * 단, 재원 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(신규개원어린이집은 가확정일 기준 재원생이 없으므로 점수를 신청할 수 없음)
3순위	0점	○ 1, 2순위 이외의 자

※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

\* 3자녀 + 맞벌이 가구 : 200점 + 200점 + 추가배점(300점) = 총 700점

※ “♣”표시된 항목은 시스템 상에서 확인되므로 증빙자료 제출필요 없음

- ※ 입소순위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 대상에게 부여된 배점 및 신청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짐 (**\*입소순위는 입소확정 전까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음**)
- ※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 70%까지를 우선 선발하며, 나머지 30%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

## 5. 증빙서류

구분	적용 원칙 및 서류 확인
거주자 입소우선권	○ 주민등록 등본(1차 서류제출 시에는 전·월세계약서, 분양계약서 제출 가능)
맞벌이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모 모두가 일(취업)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업의 기준 : 월 60시간 이상 근로</li> <li>-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</li> <li>- 휴직자(육아휴직자 포함)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</li> <li>-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.</li> <li>-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: 취업준비자</li> </ul> </li> <li>○ 취업증명 : 부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직자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,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(필수)와</li> <li>②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(근로복지공단),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중 1부 또는 소득세납세 증명서·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 또는 고용·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, 소득금액증명원, 기타 소득증명 가능서류 중 1부(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용·임금확인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- 대학원생 : 재학증명서 1부(필수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 대학 등) 불인정</li> </ul> </li> <li>- 예술인 : 예술인활동증명서 1부(필수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(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)</li> </ul> </li> <li>- 취업준비자 : ①,② 중 1부 필수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직업훈련과정참여확인서·수료증,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(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),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(필수)</li> <li>②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(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직업교육훈련(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)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,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(서류상 확인), 단 출석수업에 한함</li> <li>*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다만,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 후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(서류상 확인)</li> <li>* 구직활동 증명서류: 면접확인서, 입사지원서, 실습확인서,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(출석 수업에 한함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- 자영업 : (공통)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자격 증명 가능서류(필수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일반)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,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</li> <li>소득신고 증빙서류(세무서 접수증 등)</li> <li>사업장의 매출장부*(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),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(필수)</li> <li>*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	<p>*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. 다만, 농·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</p> <p>※ 농·어업인 : 농(어)업인 확인서, 농(어)업경영체 등록 증명서, 어선원부등본, 기타 농·어업인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(필수), 매출계약서, 판매증명서, 기타 소득증명가능 서류 중 1부(필수)</p> <p>○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</p>	
다자녀가구	<p>○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</p> <p>*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</p> <p>○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: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, 소견서,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, 임신확인서</p>	중 1부(필수)
임신부	○ 진단서, 소견서,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, 임신확인서 (필수) (임신확인일, 출산예정일, 병원명, 병원직인,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)	
국가유공자 자녀	○ 국가유공자 확인서(필수)	
제1형 당뇨아동	○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(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) 각 1부(필수)	
북한 이탈주민	○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필수)	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	<p>○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</p> <p>○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</p> <p>※ 결혼이민자 중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제출 (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)</p> <p>※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p>	중 1부(필수)
기타 한부모가족	○ 가족관계증명서(필수)	
조손가족	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(필수)	
입양된 영유아	○ 입양확인서(필수)	
가정위탁 보호아동	○ 가정위탁보호확인서(필수)	
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·자매	<p>○ 형제·자매 재원확인</p> <p>※ 단, 재원아동 형제·자매의 경우, 3월 신학기 입소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</p>	

## 6. 관련문의 및 증빙서류 제출

### ○ 입소대기 시스템 문의

※ 입소대기 신청방법 등은 [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\(www.childcare.go.kr\)](http://www.childcare.go.kr)의 입소대기신청안내 참고 및 [아이사랑헬프데스크\(1566-3232→단축번호 1번\)](tel:1566-3232)로 문의

○ 어린이집 관련 문의 및 증빙서류 제출장소

어린이집명	연락처	증빙서류 제출 장소 (가확정 순위내에서 개별 연락드립니다)
국공립 루원앨리스린어린이집	010-4891-9715	국공립루원앨리스린어린이집 (10시 ~ 18시, 12시~13시 점심시간)

서류 제출일 (가확정 대상자)

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순위 기준으로 접수일을  
아래와 같이 정하였으며,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접수일	접수 대상자
2023년 8월 10일 (목) (10시~12시)	만0세 (22년 이후 출생) ~만2세 (20년생)
2023년 8월 10일 (목) (13시~18시)	만3세(19년생) ~ 만4.5세 (18.17년생)

\* 1차 서류 확인 후 탈락자로 인하여 입소대기자 인원이 발생한 경우,  
그 인원 수 만큼 후순위 대기자를 순서대로 연락하여 입소 확정을 합니다.

\* 서류 맨 위에 입소할 영유아의 만 나이와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